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3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9. 3.)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임오경의원)

현행법은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문학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인프라’라는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 용어인 ‘기반시설’로 순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언어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 이정문위원)

용어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내용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문학 진흥 관련 <u>인프라</u> 구축 에 관한 사항 6. ~ 10. (생 략) ③ ~ ⑤ (생 략)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u>기반시설</u> ----- ----- 6.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